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325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천우재

피고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민경택, 최성대

변론 종결2022. 8. 10.

판결 선고2022. 8.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 2021. 7. 12. 체결된 사업시행권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부동산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사이에,
가. 2021. 10. 28.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10. 29. 접수 제2352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매매 및 임대업, 개발업, 분양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B와 피고 C은 건축 공사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신탁업법상 토지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업무 수행 등

- 화성시 E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F지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2. 19. 피고 B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전체 사업부지 중 90% 이상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수령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고, 피고 B로부터 용역비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9. 6. 13. 피고 B와 위 용역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추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014. 2. 19.자 및 2019. 6. 13.자 용역계약을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2020. 4.경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용역비 채권은 1,435,000,000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다른 용역비 합계 2,750,000,000원 - 기지급 용역비 1,315,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계약 체결 및 이행 등

○ 피고 B, 그 대표이사인 소외 G 및 피고 C은 2021.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승인권(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갑'은 피고 C, '을'은 피고 B, '병'은 G을 각 지칭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을'이 보유한 사업시행권을 '갑'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절차, 대금, 양도조건 등 기타 세부사항을 확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대금 등)

1. '을', '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병'이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절차[(임시)주주총회결의 및 법인변경등기 접수, 주식양도 등]를 완료하고, 이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을', '병'이 본조 제1항을 모두 이행하고, '병'이 ① '을' 공동대표이사 사임 및 이에 따른 '을' 법인변경등기 경로, ② '병'이 보유하고 있는 '을' 주식의 '갑' 및/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의 전부 양도가 완료됨과 동시에 '병'에게 사업시행권 양수도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권 양도)

1. '을', '병'은 본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권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담보신탁 계약의 수탁자인 (주)D에게 사업시행권을 이전한다. 이때, '을', '병'은 신탁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권 및 본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을', '병'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 권한 및 지위 일체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본건 사업 관련 계약상 지위의 승계 등에 필요한 모든 행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본 계약서의 효력)

본 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피고 C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21. 10. 28. 피고 D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0. 29. 피고 D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미지급 용역비 채권 1,435,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C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소외 H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주택법 제15조 제1, 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사업주체변경승인은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철회함과 아울러 새로운 사업주체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내어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승인을 받은 양도인이 사업주체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즉, 이 사건 사업시행권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 C이 2022. 1. 6.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음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정되고, 위와 같이 자백한 사실에 기초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① 피고 B과 상호가 유사하고, 실질적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 등이 동일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②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 B이 아닌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법인격남용에 따른 책임이 있으며, ③ 피고 C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약서 또는 이행합의각서에 따라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책임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책임재산인 별지 부동산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모두 신탁하였다. 이는 신탁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기재 각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 유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은 당사자들 사이에 임의로 양도될 수 없어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변제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전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로부터 물적 자산을 이전 받은 것이 아닌 점, ③ 기타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물적·인적 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유기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격 남용에 따른 책임 유무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물론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배후에 있는 회사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들은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2013년경 설립되어 2021년경까지 수년간에 걸쳐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B가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③ 기타 피고 B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거나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 C가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병존적 채무인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협약서(갑 제3호증) 및 이행각서(갑 제4호증)는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② 이행합의각서(갑 제8호증)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금의 사용처 및 순위에

관한 합의내용으로 보이고, 위 이행합의각서에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인수한다거나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평근

판사김재학

판사조정민

별지